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북한이탈주민 중 직계존속을 동반하지 않은 아동 및 청소년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이들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두텁게 지원하기 위하여 보호자 및 후견인 지정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(법률 제18596호, 2021. 12. 21. 공포, 2022. 6. 22. 시행)됨에 따라,

통일부장관이 무연고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상호 협조 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민간단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정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조의2(무연고청소년 보호) ①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1조의2제3항에서 “통일부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”란 「민법」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법인으로 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, 청소년, 교육 등의 분야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민간단체를 말한다.

②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25조의2제6항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통일부(법 제10조에 따른 정착지원시설을 포함한다) 및 법 제30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(이하 “재단”이라 한다) 관계자, 무연고청소년 보호 관련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위원으로 하며,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27조제2항”을 “영 제27조제2항”으로 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6조제2항”을 “법 제16조제2항”으로 한다.

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 제30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(이하 “재단”이라 한다)”을 “재단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2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1조의2(무연고청소년 보호) ①</u> <u>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</u> <u>지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</u> <u>이라 한다) 제11조의2제3항에서</u> <u>“통일부령으로 정하는 민간단</u> <u>체”란 「민법」 제32조에 따라</u> <u>설립된 비영리 법인으로서 북한</u> <u>이탈주민 정착지원, 청소년, 교</u> <u>육 등의 분야를 주된 사업으로</u> <u>하는 민간단체를 말한다.</u> <u>②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</u> <u>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</u> <u>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25조의</u> <u>2제6항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통</u> <u>일부(법 제10조에 따른 정착지</u> <u>원시설을 포함한다) 및 법 제30</u> <u>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지원재</u> <u>단(이하 “재단”이라 한다) 관계</u> <u>자, 무연고청소년 보호 관련 전</u> <u>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</u> <u>위원으로 하며, 심의위원회의</u> <u>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</u> <u>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.</u>

제2조(학력·자격 인정의 신청 등) ①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27조제2항 및 제28조제1항에 따른 학력인정이나 자격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학력인정·자격인정 신청서에 그 학력이나 자격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·③ (생략)

제3조(직업훈련의 신청 등) ①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6조제2항에 따른 직업훈련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.

② (생략)

제6조(가산금의 지급사유 등) ①
· ② (생략)
③ 영 제39조제8항에 따라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가산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의2서식의 가산금 지급신청

제2조(학력·자격 인정의 신청 등) ① 영 제27조제2항 -----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제3조(직업훈련의 신청 등) ① 법 제16조제2항-----

② (현행과 같음)

제6조(가산금의 지급사유 등) ①
· 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
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<u>법 제30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(이하 “재단”이라 한다)</u>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 1. · 2. (생략)	----- --- 재단 ----- ----- ----- --- 1. · 2. (현행과 같음)
--	---